

NEWS LETTER

2025-05-30

Legal Issue

- AI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법률안의 의미와 과제
- 상표권 행사 또는 등록 시 지정상품 검토의 법적 중요성

MINWHO News

- 양진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5 Rising Stars 특집에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로 선정
-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 세미나 개최 예정

Business CASE



Legal Issue

AI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법률안의 의미와 과제

현수진 변호사

지난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AI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학습 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 활용 필요성이 커진 반면, 기존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혁신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실효성 있는 조화를 시도하는 첫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이미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도 제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조항(제28조의12, 제28조의13)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 해당 특례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가명처리로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AI 기술 개발을 위해 당초의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영상·음성·이미지 등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이지만 특성상 익명화나 가명처리만으로는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안의 특례조항의 적용을 통해 학습데이터 확보와 기술 개발이 용이해질 수 있다.

▶ 강화된 안전조치 및 공간적·관리적 보호

목적외 이용 범위 확장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에서는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마련된 안전한 환경에서만 처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 공익성 및 사회적 이익 요건

정보주체의 보호와 사회적 요구를 유연하게 포섭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AI 개발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예: 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필수

모든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 및 위험요인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사후 관리

추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AI 개발 목적, 처리 유형, 영향평가 결과(해당 시)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심의·의결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6개월 내 처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정 법률안의 핵심 취지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여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

즉,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되,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AI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개발 기업들은 학습데이터 확보가 한결 수월해지는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및 영향평가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강화된 안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투명한 공개와 사후 점검 대응을 해야한다는 실무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기업들은 사전 준비와 내부 통제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은 사회적 논의와 기술적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므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술 혁신과 인권 보장의 균형 위에서 진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수진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hyunsj@minwho.kr

Legal Issue

상표권 행사 또는 등록 시 지정상품 검토의 법적 중요성

한지윤 변호사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기업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식으로, 많은 기업들은 상표의 개발, 등록, 보존과 유지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여한다. 특히,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상표법 제89조). 이러한 상표권의 등록 및 실제 다툼에서 상표권 행사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정상품'을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아래에서 한가지 사례를 제시해보겠다.

다루었던 사례 중, X회사는 유저들의 평가 및 정보취합에 관한 서비스(이하, 정보취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정보취합서비스를 브랜딩하여 Y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 및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X회사는 Y상표에 관하여 정보취합서비스에 관한 서비스류 및 그와 유사한 업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이 정보취합서비스는 X회사의 대표 서비스였고, 이에 일반 소비자 또는 대중들은 X회사의 사명(社名) 보다는 정보취합서비스의 브랜드인 Y상표가 X회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위 유명한 정보취합서비스를 일컫는 것이라 인식하였다.

이러한 Y상표 정보취합서비스를 '덕후'라 불릴 정도로 좋아하고 신뢰하는 개인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Y상표 서비스를 이용해오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①Y상표 이미지를 게시 및 소개하고, Y상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Y상표 서비스의 장점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A씨는 ②Y상표에 관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이를 자기 소지품에 붙이고 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인 A씨의 행위들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상표권자는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한 서비스류인 지정상품에 한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권을 갖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개인 A씨가 상표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X회사가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서비스류 분야에서 해당 상표를 X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1차적 금지 대상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해본다면, 즉, 개인 A씨의 ① 행위인 Y상표 이미지를 게시하고 Y상표의 정보취합서비스를 소개하는 글을 수회 게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해당 글은 X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글에 Y상표를 사용한 것이고 A씨의 개별적인 행위에 관한 게시물에 Y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A씨가 Y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A씨의 ②행위는 다소 다르다. 즉, A씨는 Y상표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강한 애정으로 Y상표를 자신이 스티커로 개별 제작하여 이를 사용하고 심지어 양도 또는 배포하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A씨의 이러한 ②행위는 무조건 상표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이는 X회사의 Y상표의 '지정상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X회사가 Y상표를 오로지 전자통신서비스류나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류에 한정하였고, 그 세부 서비스류 내용에 스티커 제작, 판매 등에 관한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A는 Y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하기는 하였어도 A의 행위가 Y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류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법 제89조가 적용될 수 없어 상표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X회사가 Y상표에 관하여 단순히 전자통신서비스류, 소프트웨어개발업 또는 그 유사 서비스류 이외에도, 해당 상표를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 제16류 문구, 팬시 관련 서비스류도 지정상품으로 추가하였거나, 또는 그 이외에 제35류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한 지정상품 서비스류를 추가하였다면 여기에는 스티커 제작 및 판매도 Y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개인 A의 행위는 Y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 내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상표권침해 불법행위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 및 서비스의 얼굴로서, 소비자에게 다른 회사나 서비스들과의 차별화를 시키는 대표적인 표식인 상표는 그 '지정서비스류'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을 지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가 결정이되므로, 앞서 제시한 것처럼, 상표권 행사 및 보호와 관련하여 우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지정상품'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상표 하나를 등록때에 무제한 적으로 서비스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류를 정할 수 있는 방법, 제한과 특정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8-3423
hanjy@minwho.kr

MINWHO NEWS

양진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5 Rising Stars 특집에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로 선정

양진영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5 Rising Stars 특집에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로 선정

대한민국 대표적 법률전문 매체로 법률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에게 신뢰받는 리걸타임즈는 '2025 Rising Stars' 특집으로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였는데,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가 차세대 리더로 선정되며 '2025 Rising Stars'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 변호사는 IP, IT,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웹크롤링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잡코리아-사람인 사건에서 약 12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KBS의 '임진왜란 1592'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에서도 완벽한 방어를 수행하며, AI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자문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양 변호사는, 신속하고 꼼꼼한 분석으로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MINWHO NEWS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 세미나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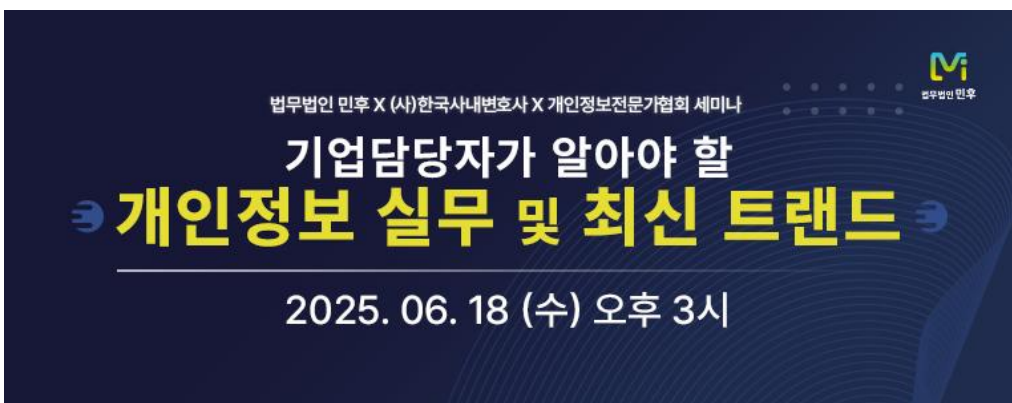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 세미나 개최 예정

법무법인 민후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함께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 트렌드"를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①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② 데이터 활용 BM을 설계할 때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privacy compliance, ③ 개인정보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판례, ④ CPO의 역할과 책임의 총 4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6월 예정된 세미나 행사를 공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많은 분들의 참가 신청이 이루어진만큼, 열띤 반응 속에 유익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메일(marketing@minwho.kr) 또는 법무법인 민후의 카카오톡 채널(@법무법인 민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MINWHO NEWS

- * 세미나명 :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트랜드
- * 일시 : 2025. 6. 18. (수) 15:00 ~ 17:10
- * 장소 :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4, 3층)
- * 문의 : 법무법인 민후 (02-532-3490)
- * 세미나 참석 신청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marketing@minwho.kr) 또는 카톡채널로 신청 (@법무법인민후)
- * 신청서 접수 기간 : 2025. 5. 7. ~ 2025. 6. 17. 17:00 (*신청 인원예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주차는 별도 지원되지 않고, 주차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세미나는 대한변협 변호사 인정연수 대상으로 신청 예정

< 신청 시 기재 내용 >

1. 신청자 구분(*선택)
 - 법무법인 민후 고객
 - 한사회 회원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원
 - 기타
2. 신청자 이름
3. 신청자 소속(회사명)
4. 신청자 기수(*변호사가 아닌 경우 부서명으로 기입)
5. 신청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6. 신청자 이메일
7. 사전 질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업무사례

1.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에 대응해 75% 감액 화해권고결정 도출
2. 유사 상표 사용 상표법위반 혐의 피의자 변호해 혐의없음(불송치) 결과 도출
3.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대리, 청구금액의 약 60% 감액 결과 도출
4. 홈페이지 도용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의 채무자 대리, 가처분 기각 결정 도출
5.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 미지급에 대응하여 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 통해 전액 인용 결정 도출
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자체 제정 '내부통제 운영 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7.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검수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공동 개발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동특허추진협약서 작성 등 법률자문
8. 자동화·물류 IT 시스템 등 개발 및 제공 기업에 유상증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관련 법률자문
9. AI플랫폼 기반 데이터 전문 기업에 실질 업무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구조가 '하도급법'상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자문
10. 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 유통 전문 기업에 미국 회사와의 수입독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